# 직원평가규칙

제 정 2005. 11. 01. 정 2007. 07. 16. 전문개정 2008. 09. 29. 전문개정 2012. 06. 08. 정 2012. 09. 04. 개 정 2015. 04. 30. 개 개 정 2015. 12. 30. 개 정 2016. 01. 06. 정 2018. 07. 27. 개 개 정 2018. 10. 31. 전문개정 2019. 11. 12. 정 2020. 11. 02. 개 정 2020. 11. 09. 정 2021. 02. 22. 개 정 2021. 04. 12. 개 개 정 2022. 01. 24. 개 정 2023. 02. 07. 개 정 2023. 10. 13. 정 2023. 11. 10. 개 개 정 2023. 11. 17.

## 제1장 총 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칙은 직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 - 1.퇴직, 휴직, 연구년,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〈개 정 2020.11.09.〉
  - 2.신규임용(수습기간의 종료)으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〈개정 2020.1 1.09.〉
  - ②위촉직 직원의 경우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적용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3조(활용) 근무실적평가 점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에 활용 할 수 있다.
  - 1. 승진, 승급, 연구년, 포상 등의 인사관리

- 2. 실적평가금 지급 등의 보수관리
- 제4조(평가방법) ①근무실적평가는 실적평가와 근무평가로 구분한다.
  - ②각 평가의 구성비율은 실적평가 75%, 근무평가 25%로 한다. 단, 근무평가는 하향 평가와 상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.
  - ③원내 보직자(겸직자 포함)는 5%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**제5조(평가자)** ①평가자는 〈별표 1〉의 직종별, 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에 의한다.〈개정 2023. 10.13.〉
  - ②평가자의 사정 등으로 평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이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6조(평가절차) ①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.
  - 1. 연구기획부장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원평가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 하여 해당 평가서류를 각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게 배부한다. 퇴직자 등의 경우 별 도 평가기준일을 정하고 평가진행 통지는 당해 직원평가 일정에 따른다.
  - 2. 평가자는 평가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연구기획부장에게 송부한다.
  - ②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실적 내용에 대한 확인을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**7**조**(**평가시기**) ①연구직, 전문직의 연구과제 실적평가는 연구과제 총량평가(양적평가). 질적평가, 수요자평가를 종합하여 수시로 실시한다.
  - ②연구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관리직, 정보직, 공무직의 실적평가는 업무실적평가로 년1회 실시한다. 〈개정 2023.10.13.〉
  - ③근무평가 및 종합평가 진행을 위한 평가기준일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위한 평가기준일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8조(근무실적평가점수 및 등급확정 등) ①근무실적평가 점수는 각 평가별 취득점수를 구성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하며,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- ②원장은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근거로 〈별표 2〉의 등급배분비율에 따라 개인별 등급을 확정한다.〈개정 2023.10.13.〉
  - ③위 제2항의 등급을 확정할 때에 원장은 다음과 같이 현원, 근무상황, 여건 등 기관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등급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〈개정 2022.1.24.〉

1. 등급별 인원비율을 예산 범위내에서 10% 조정 가능.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 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(※道출자·출연기관 공통지침/2017)〈개정 2022. 1.24.〉

- 2. 임명직, 보직자, 전문직, 공무직 등 평가그룹 5인 미만의 경우 등급배분비율 미적용하며 절대평가 한다
- ④원장은 평가의 오류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평가표의 송부)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결과를 행정지원부에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평가등급 공개) 평가등급은 〈별지 제7호 서식〉에 의거 본인에게 공개 한다. 단, 요구가 있을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를 공개한다.

#### 제2장 평가조정위원회

- 제11조(평가조정위원회) 평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조정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제12조(구성)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연구본부장과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원장이 임명하는 직원(또는 외부전문가) 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.
  - ③원장은 기본 및 정책 연구과제 등의 질적 평가를 위해 각 과제별 연구심의회(이하 '연심회')를 구성하고 외부 및 내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13조(간사)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 자로 한다.
- 제14조(역할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1. 기본, 정책, 단기, 수시, 협약과제 등 평가대상 과제 결정
  - 2. 과제별 참여점수 심의 · 조정
  - 3. 연구 및 활동실적 등 기타 업무실적의 평가방법
  - 4.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심의ㆍ의결
  - 5. 기타 평가관련 중요사항
- 제15조(이의신청) ①이의신청은 피평가자가 평가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〈별지 제8호 서식〉에 의하여 이의 신청서를 연구기획부로 서면 제출한다. 다만, 근무평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.
  - ②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.
- 제16조(위원의 제척) 위원회의 부의 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#### 제3장 연구직 평가

- 제17조(평가분류) 연구직의 평가는 기준실적과 초과실적에 따른 기본평가와 성과급평가 로 분류한다.
  - 1. 기본평가는 연구실적평가(기준실적100J) + 활동실적평가 + 근무평가로 인사고 과(승진, 승급, 연구년, 포상 등)에 반영(누적관리) 한다.
  - 2. 성과급평가는 기본평가 + 연구실적 중 초과실적으로 연간 수행 총 연구업무 평가로 실적평가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.
- 제18조(평가대상) ①실적평가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연구과제, 정책연구과제, 단 기연구과제, 수탁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실적과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하며, 원장은 과 제의 기간,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질적 평가와 수요자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②근무평가는 하향평가와 상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되, 업무능력(관리능력),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
- **제19조(평가방법)** ①각 평가 구성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,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은 〈별지 제1호 서식〉과 같다.〈개정 2021.2.22.〉〈개정 2022.1.24.〉〈개정 2023. 2.7.〉〈개정 2023.11.10.〉

구 분	평가	비율	비고	
	(1) 연구실적평가		65%	
실적평가	(2) 하도 시 거 퍼 기	원내활동	100/	
	(2)활동실적평가	원외활동	10%	
근무평가	(3)하향평가·상향평가	25%		
	합 계			

<sup>※</sup> 연구부서장(산업경제연구부장,지역개발연구부장,사회문화연구부장) 기본평가 2%, 성과급평가 3% 가점반영, 기획소통팀장 기본평가 2% 가점반영 (※항목별 배점 상한적용)

②연구실적 평가는 연구과제 총량평가(양적평가), 질적평가, 수요자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.〈개정 2023.2.7.〉〈개정 2023.11.10.〉

구 분		고유목적	사업		외부사업	
	선도과제	도정과제		이슈브리핑	용역과제	비고
과제유형	기초 기획 미래 과제 과제 전략	정책과제	현안· TFT과제	이뉴트디행 (정책브리프)	수탁과제 협약과제	1
책임의무		평가년도 정 1건 or 현인 2건 (공동: (수탁·협 70J이상일 경 최소 10J	난과제 책임 책임 1/N) 약 책임 ¦우 면제, 단	이슈 1건(5J) 의무		
과제배점	20J 25J 30J	25J	10J	5~6J(2J)	과업지시	
11/11대1급	연구사업소위원회의 '연구사업 심의'를 통해 필요시 배점 조정·반영					

- ※ 선도과제, 도정과제의 경우 연구책임 25J 초과투입 불가(미래전략은 30J)
- ※ TFT과제는 25J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업무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 또는 과제 분리하여 진행(ex 국책사업 발굴 포럼)
- ※ 기초, 기획, 미래전략과제는 10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연구과제의 중지 혹은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통해서 연구기간변경 확정
- ※ 이슈브리핑 : ① 전문연구원 참여시 1J 가점(총5→6J), ② 이슈브리핑 2건이상 가중점수 및 상한예외 인정 : (1st) 건당 5~6J, 150J 내 포함, (2nd) 건당 7J(전문연구원 포함), 157J 까지 가능, (3rd) 건당 9J(전문연구원 포함), 166J 까지 가능
- 1. 실적평가 중 개인당 과제별 연구과제 총량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 - 가. 수탁·협약과제는 과업상 인건비 총액을 원내 기준으로 변환하여 배점하며 변환 시 연구책임자 배점은 공동연구진의 1.3배 수준으로 가산할 수 있다.
  - 나. 연구진은 과제배점 내에서 '연구책임+공동연구+외부연구진(비상근 초빙연구 위원 등)'의 투입량을 연구책임자가 배분한다.
  - 다. 외부연구진(수탁과제 제외)은 과제배점 내에서 인건비 100만원당 1J로 산정한다.
  - 라. 개인당 연구과제는 최소 책임의무 과제량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.

〈개정 2021.2.22.〉 〈개정 2023.2.7.〉

- · 평가년도 정책과제 책임 1건 or 현안과제 책임 2건 (공동책임 1/N) <개정 2023.2.7.>
- · 이슈브리핑 1건(5J) 의무 (☞ 이슈 5J)
- · 연구책임 기준 수탁(협약)과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의무과제 1건을 면제 할 수 있다.
- ·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연도 연구자는 원장이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여 책임의무과제 1건(25J)을 대체한다
- 마. 총량평가(양적평가) 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한다
- 2. 질적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질적평가는 연구목적의 달성도, 연구방법의 적절성, 연구내용의 논리성, 연구 결과의 타당성, 연구결과의 활용성 등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한다.〈개정 2023. 2.7.〉

- 나. 질적평가는 착수연구심의회 및 최종연구심의회에서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본부 장을 포함하여 과제별 5인 이내의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고 원장이 평가위원을 선정하며, 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〈개정 2023.2.7.〉〈개정2023.11.10.〉
- 다. 〈별지 제3호 서식〉,〈별지 제4호 서식〉에 의하여 평가를 진행한 질적평가의 점수는 착수연구심의회 30%, 최종연구심의회 70%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며,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〈개정 2023.11.10., 2023.11.17.〉
- 3. 수요자평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수요자평가는 연구자의 연구태도, 연구결과물의 창안성, 적시성, 시책반영 여부 등을 주요항목으로 포함한다.
  - 나. 수요자평가자는 연구과제 활용기관(부서)을 중심으로 원장이 정한다.
  - 다. 〈별지 제10호 서식〉에 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. 단 과제의 특성상 양식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원장은 수요자 면접, 정책반영도 조사, 언론보도 등 평가의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활동실적 평가는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으로 구분하며, 세부지표 내용과 배점은 〈별지 제2호 서식〉과 같다.〈개정 2023.11.10.〉
- ④수탁과제(협약과제) 수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, 배점과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
  - 1. 연구책임과 공동연구진의 인건비 기준은 차등적용 한다.
  - 2. 연구책임자 배점은 해당과제 연구진 인건비 투입액을 참여자 기준 단가로 환산하여 보정한다.
  - 3. 수탁과제(협약과제)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   - 가. 연구의 연구원 재정기여도를 고려하여 원장이 포상(적정수)을 할 수 있다.
    - 나. 과제확보를 위한 시담활동(입찰) 등도 평가반영(원내활동) 한다.
  - 4. 실적평가 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- 가. 과제별 실적평가 점수는 과제별 양적평가에 질적평가 결과와 수요자평가 결과 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, 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- 나. 투입점수 환산이 불가능한 업무, DB구축 및 활용 등과 관련된 기타 실적은 원장이 별도로 평가하며,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- 다. 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⑤실적평가 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- 1. 과제별 실적평가 점수는 과제별 양적평가에 질적평가 결과와 수요자평가 결과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, 반영비율을 포함한 세부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이 평가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〈개정 2023.11.10.〉
    - (1) 근무실적평가제 반영하는 정성평가(질적평가+수요자평가)의 최종점수의 산 정과 근무실적평가 반영은 다음과 같다.
      - 가. 질적평가(원내)33.3%+질적평가(원외)33.3%+수요자33.3%
      - 나. 진행연구 및 과제의 특성상 질적평가 및 수요자평가가 곤란한 경우 각 유형별 평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, 단 수탁과제의 경우 질적평가 상위 10%를 완료전이라 하여도 반영한다
    - (2) 최종 정성평가 점수를 근무실적평가 반영하는 방법은 아래 수식을 따르며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  - 가. 근무실적평가 반영 = 0.7 +0.3(최종환산점수-80)/(100-80)
      - 나. 80점(0.6)에서 100점(1.0)까지 연속척도 나누어 평가
      - 다. 배점 예시

최종점수	100	95	90	85	80
근무실적평가 반영	100	92.5	85	77.5	70
차 이	0	-2.5	-5	-7.5	-10

- 2. 투입점수 환산이 불가능한 업무, DB구축 및 활용 등과 관련된 기타 실적은 원장이 별도로 평가하며,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3. 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구사업 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⑥근무평가는 업무능력(관리능력),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〈별지 제5호 서식〉, 〈별지 제6호 서식〉에 의하여 평가하고, 직종별, 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 〈별표 1〉과 같다. 다만 평가자의 사정 등으로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한다.
- **제20조(배점관리 및 적용)** 분기별 배점관리와 기준 실적초과 성과급반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〈개정 2021.2.22.〉.〈개정 2023.2.7.〉

구 분		분기(3개월)단	<u></u> 위 배점관리	લાગ રમા	Zł/10011E01)				
一 正	11월~1월	11월~1월 2월~4월 5월~7월 8월~1		5월~7월 8월~10월		점(100J~150J)			
배점 관리	15J~40J	15J~40J	15J~40J	15J~40J	100J까지 기본평가 반영	150J까지 성과급평가 반영			
29		분기별 최소(15J)~최대(40J), 년간 150J로 제한							

- ※ 기본평가는 정책과제를 우선 포함하며, 우수과제 우선순 평가조정위원회에서 배정
- ※ 한 과제당 투입시간은 월별 10J, 분기별 18J제한
- <개정 2021.2.22.><개정 2023.2.7.>
- 1. 분기별 배점관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 - 가. 3개월간 15J~40J로 연구투입 배점관리(월별 환산 시 최소 5J 이상)
  - 나. 평가기간(전년 11.1~익년 10.31)을 고려한 분기설정 : 1분기(11월~1월).

2분기(2월~4월), 3분기(5월~7월), 4분기(8월,9월,10월)

- 2. 연구과제 연간 총량 배점범위  $100 \text{J} \sim 150 \text{J} ($ 연구원 필요 수탁과제 등 고려) 로 하다.
- 3. 근무실적평가 반영은 기본평가와 성과급 평가에 반영한다.
  - 가. 기준배점(100J까지) 기본평가(등급)에 반영
  - 나. 기준배점 이상(총 150J까지) 성과급평가(등급)에 반영

## 제4장 연구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관리직, 정보직 평가

**제21조(평가의 구분)** 연구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관리직, 정보직의 평가 는 실적평가와 근무평가로 구분한다. 〈개정 2023.10.13.〉

제22조(실적평가와 근무평가) ① 각 평가 구성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평 가 항 목	비 율	비고
실적평가	(1) 업무실적평가	75%	
근무평가	(2) 하향평가·상향평가	25%	
합 계		100%	
○원내 보직자(겸직지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	

- ②실적평가는 업무실적평가로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출한다.
- ③평가대상자는 〈별지 제9호 서식〉에 의거 실적평가표를 제출한다.
- ④근무평가는 업무능력(관리능력),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〈별지 제5호 서식〉,〈별지 제6호 서식〉에 의하여 평가하고, 직종별, 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〈별표 1〉과 같다. 다만 평가자의 사정 등으로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한다.

## 제5장 전문직, 공무직 평가

제23조(평가의 구분) ①전문직, 공무직 평가는 실적평가와 근무평가로 구분한다.

- ②연구부서 전문직의 평가는 기준실적과 초과실적에 따른 기본평가와 성과급평가로 분류한다.〈개정 2023.2.7.〉
- 1. 기본평가는 연구실적평가(기준실적100J) + 활동실적평가 + 근무평가로 인사고과에 반

- 영(누적관리) 한다.
- 2. 성과급평가는 연구실적평가(기준실적100 + 초과실적50J = 최대150J) + 활동평가 + 근무평가로 실적평가금(개인 및 경영) 지급 등에 반영한다.
- 제24조(실적평가와 근무평가) ①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(연구기획부, 행정지원부)의 각 평가 구성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
- ②연구부서 실적평가는 연구과제 수행평가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분리하며, 활동실적 평가는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으로 구분 세부지표 내용과 배점은〈별지 제2호 서식〉과 같다.〈개정 2021.4.12.〉〈개정 2022.1.24.〉〈개정 2023.11.10.〉

구 분	평가항목	비율	비고
실적평가	(1) 연구실적평가	60%	
근무평가	(2) 하항평가	30%	
활동평가	(3) 원내·외 활동실적	10%	
	합 계	100%	

※ 양적평가 점수기준 양적평가(의무수행 100J): 개인당 수행하는 연구과제 기본총량 <개정 2021.4.12.>

구 분		월 단위 배점관리								비고						
T E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0117			
월간배점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5J~ 15J	과제 8J 월 15J			
배점조정	※ 평가기간 연구참여의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연구책임자에 참여하는 투입시간							분기 40J 연간 150J <2023.2.7>								

- ※ 양적평가 점수기준 양적평가(의무수행 100J) : 개인당 수행하는 연구과제 기본총량
- ※ 기준준배점(100J까지) 기본평가(등급)에 반영하고 기준배점 이상(총 150J까지) 성과급평가(등급)에 반영 하며 세 부적인 방법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개정 2023.2.7.>
- ③비연구부서 실적평가는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하며, 근무평가는 하향식평가로 실시한다.

구 분	평가항목	비율	비고
실적평가	(1) 업무실적평가	60%	
근무평가	(2) 하향평가	40%	
	100%		
* 가점부여 : 활동실적	(실적평가 외)	추가배점	

④근무평가는 업무능력(관리능력),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〈별지 제5호 서식〉에 의하여 평가하고, 직종별, 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는〈별표 1〉과 같다. 다만 평가자의 사정 등으로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지정한다.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〈2007.7.16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08.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최 〈2012 6 8 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〈2012.9.4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〈2015.4.30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〈2015.12.30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〈2016.1.6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**최**〈2018.10.31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〈2019.10.28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18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 부 칙 〈2019.11.12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〈2020.11.2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19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 〈2021.2.22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0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칙 〈2021.4.12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0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1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최 〈2023.2.7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2.11.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 〈2023.10.13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〈2023.11.10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 〈2023.11.17.〉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.

〈별지 제1호 서식〉<개정 2022.1.24.><개정 2023.11.10.>

# 연구부서(연구직·전문직) 근무실적평가 항목

구 분			연구직		전문직			
유 형	항	목	세부내역	기본배점		비중	기본배점	비중
		기초과제	20J			17J		
			기획과제	2	25J		17J	
		미래전략	3	30J		20J		
		정책연구	25J			17J		
			현안과제	10J	책임의무 25J		7J	
			TFT	10J	255		운영위	
		<sup>1</sup> 실적 1)			5J(1건)	65%		60%
		.1)	이슈브리핑	5~21J	12J(2건)		참여율	
					21J(3건)			
			수탁·협약	(인건비)	비례		(인건비) 비례	
A			소 계	(인건비) 비례 100J~166J 이슈 1건 150J 이슈 2건 157J 이슈 3건 166J			100J~	
실적평가			道 정책지원	최대 55	)		최대 55p	
(1+2)		rean	院 경영지원	최대 55	D		최대 55p	
		院內	院 정책포럼	3~15p			3~15p	
			院 간 행 물	2~20p			2~20p	
			논문게재	최대 20대	)		최대 20p	
	활		학회활동	최대 10대	)		최대 10p	
	동 실	院外	언론활동	최대 10대	)	10%	최대 10p	10%
	_ _ 적	りしノト	기타활동	최대 15	)	~13%	최대 15p	~13%
	(2)		성과포상	5~15p			5~15p	
			소 계	100p(10	점)		100p(10점)	
			도정반영	0.25~2p			0.25~2p	
		성과	국정반영	0.5~4p			0.5~4p	
	환류		기타실적	1~4p			1~4p	
			소 계	130p(13점)			130p(13점)	
В		n md 그년	부원	하향 100%				
근무평가		무평가 3)	부서장	상향 20%	+하향 80%	25%	연구책임40% +하향 60%	30%
(3)	(3) 연구본부장		상향 30%+하향 70%					
	합	계 (A+E	3)		100%		100%	

〈별지 제2호 서식〉<개정 2022.1.24.><개정 2023.11.10.>

# 원내·외 활동실적 세부지표 및 배점

구 분	항 목	세 부 지 표	배 점	
	道 정책지원 활동	· 중앙행정기관, 도(시·군) 회의참여 (위원회, TFT, 기타 회의 등) · 자료작성 (3p 기준 단위)	(최대 55) 회당 0.5 건당 1+α	
원 내	院 경영지원 활동	<ul> <li>연구원 각종 회의 (노사협의회 위원, 원우회, (과제 미반영)TFT 등)</li> <li>연구원 교육 및 행사참여 (교육·훈련·행사 등)</li> <li>연구원 경영지원 자료작성 (도의회, 감사자료 등 제외)</li> <li>연구입찰제안서 작성 (탈락될 경우)</li> </ul>	(최대 55) 회당 0.5 회당 0.5 过당 1+α 총합 20	
활 동 평 가	院 정책포럼 활동	<ul> <li>세미나·행사 등 주관 (책임주관, 실무지원)</li> <li>세미나·포럼 발표 등 단순참여 (발표, 토론, 좌장/사회)</li> <li>연구과제 수행과정 세미나 등 제외 (연구진 이외는 적용)</li> <li>연구원 주관 국제행사(세미나, 포럼 등)는 130% 적용</li> </ul>	(상한없음) 15~3 10, 3, 3	
	院 간행물 활동	∘ 원내 정기간행물 원고 (게재, 심사) ∘ 정책브리프, 인포그래픽스 ∘ 원내 웹뉴스 및 동향자료 작성	(상한없음) 20, 3 2, 5 2	
	논문게재	<ul> <li>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게재</li> <li>국제학술지 (SCI, SSCI급) 논문게재</li> <li>기타 학술지 논문게재</li> <li>단순 리포트</li> <li>※ 공동저자(2인이하 100%, 3~5인 70%, 6인이상 50% 적용)</li> </ul>	(최대 20) 10 20 7 2	
원 외 활 동	학술활동	<ul> <li>전문저서 출간</li> <li>학술재단 등재 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</li> <li>국제학술대회 발표·토론 (외국어 발표·토론 200% 적용)</li> <li>※ 공저자 논문기준 동일적용, 발표 &amp; 논문게재 중복 인정</li> </ul>	(최대 10) 5 3 3, 2	
평 가	언론활동	∘ 언론활동 (프로그램 참여), ∘ 신문 기고글 (칼럼·오피니언 등)	(최대 10) 1.5	
	기타활동	• 재능기부 등 원외 봉사활동 (발표, 컨설팅, 회의)	(최대 15) 0.5~10	
	성과포상 ·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급·도지사 표창 (동일공적 1건 인정) · 연구결과에 따른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 등록			
성과환류 활동평가		구분         현안반영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계획반영         사업반영         예산반영           도정반영         0.25         0.25         0.5         1         2           국정반영         0.5         0.5         1         2         4           기타실적         국가예산사업, 규제개혁과제, 비전전략 등 (1~4)	(최대 130) 최근5년 정책연구 완료과제	
○ 원내·원외 활동평가 개인최대 100P상한, 실제 배점(10점/100점) ○ 원내·원외·성과환류 활동평가 개인최대 130P상한, 실제 배점(13점/130점) ○ 원외 활동평가 연구과제(기초·기획·미래전략·정책) 성과 활용시 20%가점 부여 ○ 제시된 평가항목의 조정·반영(배점조정 및 평가항목 추가 등)은 평가조정위원회에서 논의·적용, 경영지원(업무보고, 감사, 회의, 동향) 등 공통업무 관련, 평가 미반영				

〈별지 제3호 서식〉<개정 2023.11.10.><개정 2023.11.17.>

# 착수연구심의회 평가표

#### 1. 연구과제 개요

과 제 명		
구 분	과 제 코 드	
소 관 부 서	연 구 기 간	

## 2. 종합 평가(정량)

평가항목	평가지표		
   1. 연구 필요성 및 목적(30)	① 연구주제의 시의성(10)		
1. 2T 218 & ¬¬(00)	② 연구목적의 명확성(20)		
	③ 정책동향 검토의 적절성(10)		
2.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(20)	④ 선행연구와 차별성 및 연구주제 독창성(10)		
   3. 연구체계 및 방법(30)	⑤ 연구수행의 체계성(15)		
3. 인구세계 및 영합(30)	⑥ 연구방법의 적절성(15)		
4.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(20)	⑦ 연구결과 도출 가능성(10)		
4. 선구들파의 활용 계획(20)	⑧ 정책활용 가능성(10)		
총점(100)			

		배점표		
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10	9	8	7	6
20	18	16	14	12
10	9	8	7	6
10	9	8	7	6
15	13	11	9	7
15	13	11	9	7
10	9	8	7	6
10	9	8	7	6
	(	) 7	점	

- \* 총점 80점 이상 : 통과, 79~70점 : 조건부 통과, 70점 이하 : 재심의
- 3. 종합 평가(평가의견)

	평 가 의 견					
심 의 위 원	소속/직위 :		성 명 :	(서명)		

〈별지 제4호 서식〉<개정 2023.2.7.><개정 2023.11.10.><개정 2023.11.17.>

## 최종연구심의회 평가표(기초·기획·미래전략)

1. 연구과제 개요

과 제 명		
구 분	과 제 코 드	
소 관 부 서	연 구 기 간	

#### 2. 종합 평가(정량)

평 가 항 목					
1. 연구 목적의 달성도(20)	① 연구목적과 부합성(10)				
	② 심의의견 반영도(10)				
2. 연구방법의 적절성(20)	③ 연구수행 체계(10)				
	④ 최근동향, 자료수집 및 분석(10)				
3. 연구 내용의 논리성(20)	⑤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절성(10)				
5. 연구 대등의 논디성(20)	⑥ 보고서 구성 체계성과 연계성(10)				
4. 연구 결과의 타당성(25)	⑦ 연구결과 객관성(10)				
4. 선구 철파의 다당성(25) 	⑧ 연구결과 명료성(15)				
5. 연구결과 활용성(15)	⑨ 연구결과 시의성(5)				
). 선구철과 활용성(15) 	⑩ 연구성과 활용계획(10)				
	총점(100)				

		배점표								
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0	9	8	7	6						
15	13	11	9	7						
5	4	3	2	1						
10	9	8	7	6						
	(	)	 점							

- \* 총점 80점 이상 : 통과, 79~70점 : 조건부 통과, 70점 이하 : 재심의
- 3. 종합 평가(평가의견)

평 가 의 견						
심 의 위 원	소속/직위 :		성 명 :	(서명)		

# 최종연구심의회 평가표(정책·현안)

#### 1. 연구과제 개요

과 제 명		
구 분	과 제 코 드	
소 관 부 서	연 구 기 간	

#### 2. 종합 평가(정량)

평 가 항 목						
  1. 연구 목적의 달성도(20)	① 연구목적과 부합성(10)					
	② 심의의견 반영도(10)					
2. 연구방법의 적절성(15)	③ 연구수행 체계(10)					
	④ 최근동향, 자료수집 및 분석(5)					
3. 연구 내용의 논리성(20)	⑤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절성(10)					
[8. 원구 대용의 본다정(20)	⑥ 보고서 구성 체계성과 연계성(10)					
4. 연구 결과의 타당성(20)	⑦ 연구결과 객관성(10)					
4. 선구 철파의 다당성(20) 	⑧ 연구결과 명료성(10)					
도 여그경기 화요서/OE\	⑨ 연구결과 시의성(10)					
5. 연구결과 활용성(25)	⑩ 연구성과 활용계획(15)					
	총점(100)					

	배점표								
매우 우수	우수	보통	이흡	매우미흡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5	4	3	2	1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10	9	8	7	6					
15	13	11	9	7					
	(	)	점						

- \* 총점 80점 이상 : 통과, 79~70점 : 조건부 통과, 70점 이하 : 재심의
- 3. 종합 평가(평가의견)

평 가 의 견					
심 의 위 원	_   소속/직위 :		성 명 :	(서명)	

#### 〈별지 제5호 서식〉

# **근무평가표** (하향평가)

평가대상자					
부 서		직 위			
직 급		성 명			

평	평가척 <u>5</u> 가 항 목	Ē	10	9	8	7	6	5	4	3	2	1	합계 (A+B)
	전문성	(10)											
	분석·응용능력	(10)											
업무	기획능력	(10)											
능력 (50)	창 의 력	(10)											
	판단력·통찰력	(10)											
	소계(A)												
	성실성	(10)											
	책임성	(10)											
업무 태도	상호 협력성	(10)											
(50)	적극성	(10)											
	근무태도	(10)											
	소계(B)												

\•/	100전	미니저	ᄁᆝᄌ
•x•	1002		/ -

평가의견	직 유	4:	
8711	성 명	<b>∄</b> : (	0

〈별지 제6호 서식〉

# **근무평가표** (상향평가)

	평가대상자							
부 서		직 위						
직 급		성 명						

평 🕽	평가척도 평가 항 목			9 (18)	8 (16)	7 (14)	6 (12)	5 (10)	4 (8)	3 (6)	2 (4)	1 (2)	합계 (A+B)
	지휘력·통솔력	(20)											
관리	업무조정능력	(20)											
능력	업무추진력	(10)											
(60)	기획 및 창의력	(10)											
	소계(A)												
	책임감	(10)											
업무	성실성	(10)											
태도	소통·화합	(10)											
(40)	적극성	(10)											
	소계(B)												

※ 100점 만점 기준

퍼기이건	직위 :	
평가의견	성명 :	<b>(1)</b>

〈별지 제7호 서식〉

# **근무실적평가**(종합평가서)

<b>종합 평가 결과</b> (소속)(작급	급)(성	명)					
	종합평가결과						
0000년	UO TI						
0000년	비고						
작	작 성 자 : 평가담당						
특기사항							
	년 월 일						
전북연구원장							

〈별지 제8호 서식〉

# 이의신청서

신청자 : (소속)	(직급)	(성명)	
	1. 이의 신:	청 사유	
2. 첨부서류			
직원평가규칙에 으	거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제	기합니다.	
	신청자	인	
전북연구원장 귀하			

〈별지 제9호 서식〉

# 실적평가표

1. 피평가자				
(소속)		(직급)	(성명)	-
2. 담당업무				
3. 업무실적				
. = = = = 1				
4. 평가점수				
평가점수	평점	점		
평가자	(소속)	(직급)	(성 명)(인)	

〈별지 제10호 서식〉

## 수요자평가표

1. 연구과제를 수행한 전북연구원 연구진의 연구태도는 어떠했습니까?

최	<u>P</u>	우수	보통	미흡			매우미흡	<u> </u>	
매우 적극	적인 자세	열심히하 는 편	보통	마지못해 하는자세		매우 불성실한 자세			
10	9	8	7	6	5	4	3	2	1

2.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물의 창안성(아이디어)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최우	<u>'</u> 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	
매우 높게	생각한다	비교적 높게생각	보통	비교적 낮게생각	매우 낮게 생각한다					
10	9	8	7	6	5	4	3	2	1	

3. 연구결과물의 적시성에 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최우	<del>'</del> 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
매우 적절하	하다(했다)	비교적 적절	보통	비교적 부적절	매우 부적절하다(했다)				
10	9	8	7	6	5 4		3	2	1

4. 제출된 연구결과물을 통해 연구진이 전라북도의 지역실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?

최우	?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
매우 그	그렇다	비교적 그렇다	보통	비교적 그렇지 않다	전혀 그렇지 않다				
10	9	8	7	6	5	4	3	2	1

5.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귀 실.국.과와 과제 착수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**연구내** 용과 관련한 혐의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까?

최우	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
매우 원활한 이루어		비교적 원활한편	보통	그다지 원활하지 못한편		협의과정	이 거의	없었다	
10	9	8	7	6	5	4	3	2	1

# 6. 연구수행과정부터 최종 연구결과물 발간 이전까지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습니까?

최	<u></u>	우수	보통	미흡		0	H우미ê	<u>5</u>	
수정요구 사항 없음			수정요구사항 의부반영 의부반영 전체 미		-				
10	9	8	7	6	5	4	3	2	1

# 7. 연구결과물의 **시책반영도(활용도 또는 활용예정도)**는 어느 정도로 (예상되십니까?)였습니까?

최우	'수	우수	보통	미흡		매	우미흡		
매우 높였 높을 것		비교적 높음	보통	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	시책반인		가고자료 없음	활용기	치도
10	9	8	7	6	5	4	3	2	1

# 8. 과제결과가 **지역사회 해당**부문에 대해 어느 정도의 **공헌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(예상)하십니까?

최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
매우 높았다(매우 높을 것이다)	비교적 높았다 (높을것이다 )	보통	비교적 낮을 것이다(낮을 것으로 예상된다)	매우 낮을 것이다				
10 9	8	7	6	5	1	3	2	1

# 9. 과제의 연구결과물(연구목적 달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)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(하셨습니까?)

최	<u></u>	우수	보통	미흡		매	우미흡		
매우 민	<u> </u>	비교적 만족	보통	비교적 불만족		매우 불	불만족 현	한다	
10	9	   8	7	6	5	4	3	2	1

#### 10. 고객입장에서 연구과제를 전북연에 의뢰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최우	약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			
매우 질	할 했다	비교적 잘했다	보통	비교적 후회한다	매우 후회한다				
10	9	8	 7	6	<del>-</del> 5	4	3	2	1

〈별표 1〉<개정 2022.1.24.> <개정 2023.10.13.>

## 직종별, 직급별 평가자 및 확인자

#### 1. 연구직

① 근무평가 (하향평가와 상향평가 병행) <개정 2022.1.24.,개정 2023,10.13>

구 분	상향평가	하향평가					
구 문	8887	1차	2차	3차			
부 장	부원(20%)	_	연구본부장(30%)	원장(50%)			
부 원	_	부장(20%)	연구본부장(30%)	원장(50%)			
<개정 2022.1.24.> <삭제 2023.10.13.>	_	-	<개정2022.1.24.> <삭제 2023.10.13.>	원장(50%) <삭제 2023.10.13.>			

#### ② 실적평가

구 분	총량평가(양적평가)	질적평가	수요자평가
작성자	연구책임자 (운영위원회)	과제별평가위원 (연구심의위원회)	수요자
확인자	평가조정위원회	평가조정위원회	평가조정위원회

#### 2. 연구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관리직, 정보직

① 근무평가 (하향평가와 상향평가 병행)<개정 2023,10.13>

	분	상향평가	하향평가					
	ᄑ	ಇ೩೨೩	1차	2차	3차			
연구분	본부장	부장(30%)	-	-	원장(70%)			
<삭제 2023.10.13.>		<삭제 2023.10.13.>	_	_	<삭제 2023.10.13>			
부 장	연구기획	부원(20%)	_	연구본부장(30%)	원장(50%)			
T 6	행정지원	부원(20%)	_	_	원장(80%)			
연구기획		_	부장(40%)	연구본부장(30%)	원장(30%)			
부 원 	행정지원	_	부장(40%)	_	원장(60%)			

#### ② 실적평가<개정 2023,10.13>

직 위	(직급)	1차 2차		3차
연구본부장				원장(100%)
<삭제 2023.10.13.>		_	_	<삭제 2023.10.13.>
부 장	연구기획	_	연구본부장(50%)	원장(50%)
T 6	행정지원	_	_	원장(100%)
부 원	연구기획	부장(40%)	연구본부장(30%)	원장(30%)
건	행정지원	부장(40%)	_	원장(60%)

#### 3. 전문직, 공무직

① 근무평가 (하향평가) <개정 2022.1.24.><개정 2023,10.13>

구 분	구 분	1차	2차	3차	4차
연구부서	연구본부	연구책임	부장 (30%)	본부장 (15%)	원장 (30%)
선구구시	<삭제 2023.10.13.>	(40%)	_	<개정 2022.1.24.> <삭제 2023.10.13.>	<개정 2022.1.24.>
	전문연구원	-	부장 (40%)	본부장 (30%)	원장 (30%)
비연구부서	전문행정원 부설기관,공무직	_	부장(보직자) (40%)	_	원장 (60%)

- ※ (부설기관), (공무직)청소원
- ※ 공무직(청소원)은 업무실적평가를 근무평가로 일원화<개정 2022.1.24.>

#### ② 실적평가

구 분	구 분	1차	2차	3차	4차		
연구부서	전문연구원	※연구직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로 분리하며, 연구과제외 활동실적에 대해 별도가점 부여					
비연구부서	전문연구원	-	부장 (40%)	본부장 (30%)	원장 (30%)		
	전문행정원 부설기관	_	부장(보직자) (40%)	_	원장 (60%)		

#### 〈별표 2〉

## 등급배분비율

#### 1. 연구직, 전문직(연구부서)

① 기본평가 : 실적평가(100J)+활동평가+근무평가

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비율	20%	40%	30%	10%
적용	∘ 인사고과 에 반영			

② 성과급평가 : 기본평가+100J 이상 실적평가 반영

등급	가등급	나등급	다등급	라등급
기준	(기준액)×1.25	(기준액)×(1.25~1)	(기준액)×(1~0.75)	(기준액)×0.75
적용	· 실적평가금 지급에 반영			

#### 2. 연구본부장, 연구기획부장, 행정지원부장, 관리직, 정보직 <개정 2023.10.13.>

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비율	20%	40%	30%	10%
적용	· 인사고과 및 실적평가금 지급에 반영			

#### 3. 전문직(지원부서), 공무직

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비율	20%	40%	30%	10%
적용	• 인사고과 및 실적평가금 지급에 반영			